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823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연관산업의 범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북극항로위원회의 구성·운영,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전문인력 양성,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관산업의 범위(안 제2조)

법률에 따른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준하는 산업으로서 「선박관리산업 발전법」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및 「원자력진흥법」에 따른 원자력 관련 산업으로 규정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안 제3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를 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북극항로 정보플랫폼 구축·운영, 연관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및 법령·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안 제5조)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실태조사의 범위를 연관산업 시장 동향 및 사업체 현황, 항만·물류 기반시설 및 안전운항 인프라 현황, 운항·물류 실적 및 운송 수요 등으로 정하고, 조사 방법 및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근거를 규정함

마.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에 포함할 사항(안 제6조)

지역별 육성전략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육성전략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지역적 여건 및 현황 분석,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추진체계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북극항로위원회 및 북극항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회의 회의 소집,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무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실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

사. 북극항로추진본부의 구성·운영(안 제10조)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본부장 1명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하도록 위임함

아.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안 제11조)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안 제12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전담조직·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업무의 위탁(안 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6. 08. 10. ~ 09. 21.)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북극항로 연관산업의 범위)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4. 「원자력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 관련 산업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북극항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4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극항로 정보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3. 북극항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 까지 확정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확정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사업체 현황
2.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제도 현황
3. 북극항로 관련 항만·물류 기반시설 및 안전운항 기반시설 현황
4. 북극항로 운항·물류 실적 및 운송 수요

5. 북극항로 관련 연구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6. 북극항로 관련 전문인력의 현황 및 양성 실태
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또는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육성전략)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육성전략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지역적 여건 및 현황 분석
 3.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정합성 검토
 4. 육성전략의 추진 일정 및 추진체계
 5.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7조(북극항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에 따른 북극항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북극항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북극항로 관련 기술·경제·사회·국제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의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으로서 그 기본방향·목표 또는 사업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제10조(북극항로추진본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극항로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는 본부장 1명과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본부의 본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본부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극항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운영 현황 점검

3.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2.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협력의 지원

3. 그 밖에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센터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해양수산부 장관은 센터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
2.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대학

6. 그 밖에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기획지원과	
연 락 처	(051) 773 - 6315